

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

2017년 개정사항은 **붉은색**으로 표시

총급여액

(연간급여액-비과세소득)

(-) 근로소득공제

총급여액 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	350만원 +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 초과 금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 초과 금액의 5%
1억 원 초과	1,475만원 + 1억 원 초과 금액의 2%

근로소득금액

(총급여액-근로소득공제)

(-) 인적공제

기본공제
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등)

추가공제
(경로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)

- 근로자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: 1인당 150만원 (사망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기준)
- '부양가족'요건: 직계존속(동거+60세이상/57.12.31.이전출생)·직계비속·입양자(동거 불문, 20세이하/97.1.1.이후출생)·위탁아동(18세미만/2000.1.1.이후출생)·형제자매(동거+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/57.12.31.이전/97.1.1.이후)·수급자(동거+제한없음)
- 경로우대자 공제: 만70세 이상(47.12.31.이전 출생) 100만원
- 장애인공제: 1인당 200만원 (장애인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최대 5년치 환급가능)
- 부녀자공제: 50만원 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, 한부모공제: 100만원

(-) 연금보험료 공제

연금보험료 공제

- 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 연금: 본인명의 납부금액 전액

(-) 특별소득공제

보험료

- 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: 전액공제

주택자금
(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·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)

- 공제액: ①주택임차입금원리금상환액×40% +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
- ★ 주택임차입금 대상 대출기관에 '국가보훈처' 추가(17.1~)
- 한도: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+ ① = 300만원
-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+ ① + ② = 500만원(상환기간15년이상 & 기타)
- (15년 이상 & 고정금리 & 비거치식 분할상환: 1,800만원, 15년 이상 & (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): 1,500만원, 10년 이상 & (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): 300만원)

(-) 그 밖의 소득공제

개인연금저축

(2000.12.31.이전 가입) 공제액: 연간납입금액의 40% (한도: 72만원)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

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 (사업·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: 500만원 / 4천~1억: 300만원 / 1억원 초과: 200만원) ※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도 가능

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

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(각 240만원 이하, 신청서류 중 '등본' 삭제), 근로자 주택마련저축(180만원 이하) 납입금액의 40% (상기 주택자금 한도 참조)

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
(창업·벤처전문 PEF 출자)

출자·투자액의 10%(벤처기업 직접투자시 1,500만원 이하:100%, 1,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:50%, 5천만원 초과:30%) (★대상에 창업·벤처전문 PEF 추가)

신용카드
(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, 전통시장, 대중교통)

공제액:(사용액-총급여액의 25%) × [신용카드:15%,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·전통시장·대중교통:30%] ★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비용금액에 포함

우리사주조합 출연금

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(한도:400만원)

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

고용유지·임금삭감액(직전임금총액-당해임금총액)의 50%공제(한도:1,000만원)
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

2015년말까지 가입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:240만원)

(-) 세액감면

정부간협약·조세조약감면

파견외국인/원어민교사, 정부간 협약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시 면세 혜택

조세특례제한법상감면

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% 세액 감면(한도150) (13년이전취업:청년:100%/14~15년취업:50%/16년이후취업:70%)

(-) 세액공제

근로소득세액공제

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%, 130만원 초과 (71만5천원+30%)공제(74·66만원 한도) (한도: 3천3백이하 74만원, 7천만원 이하 최하 66만원, 7천만원 초과 최하 50만원)

자녀세액공제

· 자녀1명(15만원), 자녀2명(30만원), 자녀3명이상(30만원+2명초과1인당30만원)

연금계좌
(공제율12%,15%)

· 6세이하 자녀공제: 2명(15만원), 3명이상(15만원+2명초과1인당15만원)

· 출생임양공제: 과세기간 내 출생·임양자녀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이상 70만원

· 연금지출계좌 납입액(한도:400만원) ★단, 총급여 1.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300만원

· 퇴직연금계좌 납입액(한도:연금저축액 포함 700만원) ※ 공제율 15%(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12%)

· 보장성100만원(저축성 제외)한도 12% · 장애인전용보장성100만원한도 15%

① 본인·65세 이상자·장애인·납입시술비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없음(납입시술비는 20%) (단, ①의 의료비 금액 < 총급여액×3%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①에서 차감)

② '㉠'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- 총급여액×3% (공제한도 700만원)

※ 시력보정용안경·콘택트렌즈(50만원/1명), 장애인보장구·의료기기 구입(임차)비용 등

수업료·입학금·보육비용·급식비·(초·중고)교과서대금·(중고)교복(체육복)구입비용(연50만원)

· 제1학술비(연30만원) · 근로자가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원리금(생활비, 연체금, 감면액 제외)

소득공제 종합한도

(2,500만원)

과세표준 (×) 기본세율 (6~40%) 산출세액

표준세액공제

(13만원)
특별소득공제·특별세액공제·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

특별세액공제

보험료(공제율12%,15%)

의료비(공제율15%)
공제세액:(㉠+㉡)×15%

교육비
(공제율15%)

기부금
(공제율100/110, 15%,25%,30%)

납세조합공제

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10% 공제

주택자금차입금이자

'95.11.1.~'97.12.31.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%

외국납부세액

한도: 근로소득 산출세액 × (국외근로소득금액 / 근로소득금액)

월세세액공제(공제율10%)

총급여액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이하 무주택세대주가 지급한 월세 (750만원한도)의 10% (17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)

★ 대상주택: 국민주택규모의 주택(주거용오피스텔포함), 준주택 중 다중생활시설(고시원)

결정세액

(-) 기납부세액

납부 또는 환급세액